

소액 청구 및 민사 법원 소송에 대한 안내

소액재판소에서는 미지급 임금, 임금 추가 지급, 초과 근무 수당,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소는 돈에 관한 소송만을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비공식 법정입니다. 타운이나 빌리지 법원에서는 최대 3,000달러까지, 시 법원에서는 최대 5,000달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달러 또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청구로 나눌 수 없습니다. 청구 금액이 최대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민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의 모든 도시, 타운, 빌리지에 소액재판소가 있습니다.

청구를 제기하려면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사업체의 정확한 상호, 법적 이름,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운티 서기 사무소에서 사업체의 법적 이름을 확인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0달러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 시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 법원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Bronx County	851 Grand Concourse	Bronx	NY	10451	(718) 618-2517
Kings County	141 Livingston St.	Brooklyn	NY	11201	(347) 404-9021
New York County					
Harlem	170 East 121 St.	New York	NY	10035	(212) 828-7588
Manhattan	111 Centre St.	New York	NY	10013	(646) 386-5484
Queens County	89-17 Sutphin Blvd.	Jamaica	NY	11435	(718) 262-7123
Richmond County	927 Castleton Ave.	Staten Island	NY	10310	(718) 675-8460

뉴욕 시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뉴욕 법원 웹사이트에서 법원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www.nycourts.gov. 청구 제기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귀하의 지역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뉴욕 주 통합 법원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소액 청구 또는 민사 법원 소송에 관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제기
- 사건 준비
- 재판
- 판결 집행

다음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하십시오. www.nycourts.gov

- 소액 청구 지침; 시, 타운 및 빌리지 법원
- 소액 청구 법원 지침; NYC, Nassau 및 Suffolk Counties

기타 질문은 뉴욕 주 통합 법원 시스템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1-800-CourtNY (800) 268-7869
혹은 이메일 문의: <mailto:question@nycourts.gov>.